

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일부개정(안)

'23. 9. 6.(수)	경영관리실장 최현수: ☎6949-6345	경영관리팀장 김선경: ☎6949-6312
	기획조정실장 박경원: ☎6925-3697	전략기획팀장 봉선호: ☎6925-8675

□ 개정이유

- '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'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정('22.3.25.시행)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보완·정비.
- 재단의 경영환경 변화(본부 조직개편,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해지, 종합재가센터 통합 운영 추진)에 따른 제31조(조직 및 정원) 별표3 기구표 변경.
- 시의회 보고 전에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5조(정관변경) 정관 개정 절차 변경.

□ 주요골자

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개정

- 근거 법령 변경 : 「민법」 제32조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⇒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
 - 제2조(설립근거 및 명칭) 제1항, 제39조(적용법령),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
- 보건복지부장관 승인·보고·허가 절차를 서울시장 승인·보고·허가로 변경
 - 제5조(수익사업) 제2항, 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제4항(삭제), 제7조(임원의 선임) 제6항, 제7조(임원의 선임) 제7항(삭제), 제13조(임원의 직무) 제6항 5호·7호, 제17조(이사회회의 소집) 제5항, 제24조(재산의 관리) 제2항·제3항, 제28조(사업계획과 예산) 제1항·제3항(신설), 제35조(정관변경), 제36조(재단해산) 제2항, 부칙 제1조(시행일)

② 경영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한 본부·조직 재구성 등 반영

- 소속기관의 순차적 통합에 따른 정관개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구표의 실·본부로의 변경 : 제31조(조직 및 정원) 제1항의 별표3

※ 서울시 타 출연기관(서울시복지재단, 50플러스재단) 및 시·도사회서비스원은 정관 기구표에는 ‘실’ 단위 기구표 표기

③ 시의회 보고 전 정관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관변경 절차 변경 *제314회 보건복지위원회(22.9.22) 지적사항

- 정관 제35조(정관변경)

<현행>



<변경>



참고사항

○ 제안근거

-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’ 22.3.25.시행)
-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’ 22.3.25.시행)

○ 추진절차 및 일정

구분	시의회 상임위 보고	→	이사회 의결	→	서울특별시장 허가
일정	23.9.6		23.9.15(예정)		23.9월 이내

※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‘22.3.25.시행) 제13조(정관)②시·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첨부

- 붙임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조(설립근거 및 명칭)</p> <p>① 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」에 의하여 설립한다.</p>	<p>제2조(설립근거 및 명칭)</p> <p>① 이 법인은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의하여 설립한다.</p>
<p>제5조(수익사업)</p> <p>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5조(수익사업)</p> <p>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<u>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
<p>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p> <p>④ 상근임원의 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</p>	<p>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</p> <p>④ (삭제)</p>
<p>제7조(임원의 선임)</p> <p>⑥ 이사,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<u>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</u>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<u>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</u>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⑦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 시장이 임명한다.</p>	<p>제7조(임원의 선임)</p> <p>⑥ 이사,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⑦ (삭제)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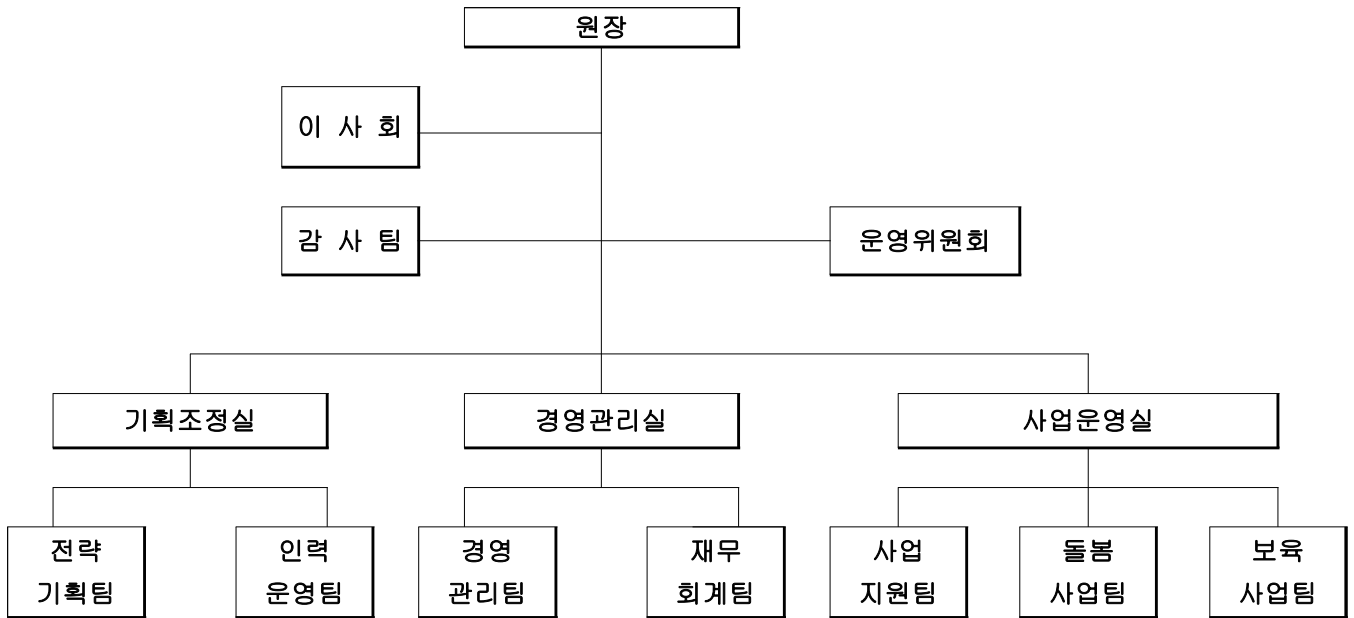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
<p>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</p> <p>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3.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</p> <p>4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</p> <p>5.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</p> <p>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p>	<p>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“법”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</p> <p>2. “법”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p>
<p>제13조(임원의 직무 등)</p> <p>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5.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<u>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</u>에 보고하는 일</p> <p>7.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<u>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</u>에게 보고하는 일</p>	<p>제13조(임원의 직무 등)</p> <p>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5.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<u>시장에게</u> 보고하는 일</p> <p>7.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<u>시장에게</u> 보고하는 일</p>

현행	개정
<p>제17조(이사회 소집)</p> <p>⑤ 이사장이 궐위(闕位)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<u>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</u>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.</p>	<p>제17조(이사회 소집)</p> <p>⑤ 이사장이 궐위(闕位)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<u>시장의 승인을 받아</u>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.</p>
<p>제24조(재산의 관리)</p> <p>②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<u>시장의 승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,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<u>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</u>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재산의 관리)</p> <p>②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<u>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,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<u>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</u>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
<p>제28조(사업계획과 예산)</p> <p>① 재단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<u>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.</p> <p>③ (신설)</p>	<p>제28조(사업계획과 예산)</p> <p>① 재단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<u>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.</p> <p>③ <u>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
<p>제35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<u>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35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<u>서울시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
<p>제36조(재단해산)</p> <p>② <u>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6조(재단해산)</p> <p>②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<u>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해산 등기를 마친다.</u></p>
<p>제39조(적용법령)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따른다. <개정 2020. 10. 7.></p>	<p>제39조(적용법령)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“법”을 우선적으로 따르며,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따른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
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<u>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<u>시장의 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<별표 3>

기구표



※ 소속기관: 종합재가센터(12개소), 데이케어센터(2개소), 어린이집(7개소)

